

대학원 학생제안 교과목 개설신청 안내

I. 개요

1. 취지

- 가. 4단계 BK21사업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원하는 수업 내용을 설계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 수요 중심의 교육과정 구현에 기여
- 나.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및 학과 커리큘럼 다양화

2. 기대효과

- 가. 학생제안 교과목의 이수를 통해 본인의 전공분야연구 및 논문작성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음
- 나. 교과목 개발 과정에서 학생과 교수자의 협업을 통해 학생들의 현실적 수요와 교수자의 연구력이 조화를 이룸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

3. 신청대상

가. 일반대학원 **4단계 BK21사업 참여 학과**

나. **학과당(사업단) 1과목 필수 신청**

- 1) 학생제안 교과목 개설을 독려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과정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
- 2) 4단계 BK21사업 참여 학과를 대상으로 매학기 학생제안 교과목을 개설하는 프로세스를 정례화
- 3) 복수의 학과가 하나의 사업단으로 4단계 BK21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, 사업단에서 1과목만 신청 가능

다. 신청 가능 형태

개설 구분	과목개발방식
신규과목 개설	▪ 학생제안 교과목 신청서 심사를 통해 적합한 과목을 선택하여 신규 개설 (교과과정위원회 회의록 필수 제출)
기존 학생제안 교과목 재개설	▪ 기존의 학생제안 교과목을 연속해서 개설하거나 격학기 등의 주기적 형태로 개설 가능
기존 개설과목 활용	▪ 기존 개설과목에 학생들의 제안사항을 반영하여 커리큘럼 개편 ▪ 커리큘럼 개편에 따른 교과목명(국·영문) 변경 가능

※ 학생제안 교과목의 경우, 수강편람 유의사항에 [학생제안교과목] 표기

라. 신청 이후 절차

- 1) 학과의 개설승인심사를 통과한 학생제안 교과목은 대학원의 별도 심사 없이 개설
- 2) 학생들과 과목 담당 교원이 16주차 커리큘럼 공동 논의
- 3) 과목 개발 완료 후 강의 시간표 확정, 강의계획서 등재 진행

II. 과목 개발 및 개설신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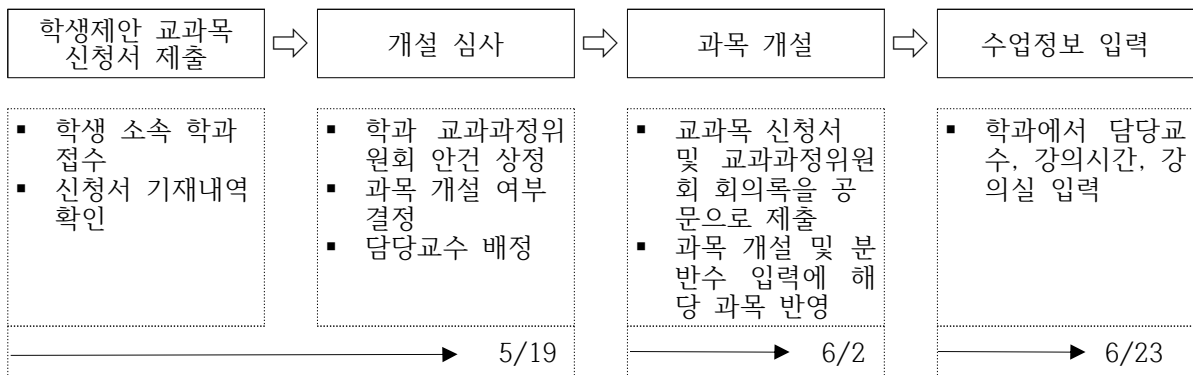
1. 과목 개발

가. 개설요건

종별	학점	평가방식	담당교수	비고
전공	3	Letter Grade	- 과목 제안에 참여한 학생의 소속 학과 전임교원 최소 1인 2인 이상 팀티칭 가능	대학원 교과목 폐강 기준 준수 후 재수강 발생 가능성 고려

나. 복수의 학생이 과목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, 2개 이상 학과의 교과과정을 융합한 신규과목도 제안 가능 (융합 과목일 경우, 유관 학과 교원들의 팀티칭 권장)

2. 개설신청 절차



3. 과목 개발·운영비 지원 및 사용지침

가. 지원금액: 과목당 1,000,000원

- 1) 4단계 BK21사업 참여 학과당(사업단) 1과목 개설 원칙
- 2) 기한 내에 학생제안 교과목을 신청하지 않은 학과는 개발·운영비 지급 대상 제외
- 3) 과목 최초 개설 시에 한해 과목 개발·운영비 지원 (동일 과목 연속 지원 불가)

나. 지원 가능 항목

구분	집행기준	금액상한	증빙자료
원고료	- 지급기준: A4 1매당 50,000원 이내 ※ 표지, 목차 등 여백이 절반 이상 차지하는 경우 원고 매수에 미포함 - 지급대상: 과목의 담당교수 - 인쇄물로 적용하기 어려운 콘텐츠는 동영상으로 제출 가능하나 실제 강의를 촬영한 동영상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, 해당 과목을 위해 별도로 자체 제작한 콘텐츠만 지원 가능 - 제한사항 1) 기존 교재 편집 2) 기존 강의 교안과 동일한 교안 (기존 개설과목 활용 또는 기존의 학생제안 교과목 연속개설의 경우) 3) 공개 콘텐츠의 내용을 발췌·편집한 교안	1,000,000원	- 강의계획서 - 강의교안 - 기타 자체 제작 콘텐츠 (동영상, 보고서 등)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- 신분증 및 통장사본

구분	집행기준	금액상한	증빙자료
특강료	- 지급기준: 시간당 300,000원 이하 1) 교과목 수업 중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특강을 진행한 경우 지급 가능 2) 교내 교원에 대한 특강료 지급 불가 3) 총 수업시간 중 1/3 범위 이내까지 허용 - 시간당 지급기준과 총 수업시간 제한의 준수를 전제로 복수의 특강 강사를 초빙할 수 있음 (특강 강사의 초빙 및 섭외는 학생과 담당교수가 협의하여 결정)	1,000,000원	- 특강계획서 - 특강 결과보고서 - 특강 자료 - 참석자 명단 - 강사료 확인서 - 특강 강사카드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- 신분증 및 통장 사본
펠로우십	- 지급기준: 과목당 500,000원 이하 1) 4단계 BK21 참여 대학원생 한정 2) 수혜 인원수 관계없이 과목당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- 학생제안 교과목 제안자에게만 지급 가능 - 학생의 기존 장학금액과 무관하게 수혜 가능 - 지급요건 1) 최초 개설시에만 지급 가능(연속개설과목 지급 불가) 2) 개설신청서 양식에 학생제안 교과목 심사 소견을 상세히 기술 3) 학과 회의를 통하여 과목의 개설을 승인한 내역이 확인되어야 함	500,000원	- 개설신청서 (심사자 소견 상세 기술) - 운영보고서 - 학과 회의록 (교과목 선정 사유, 학생제안의 우수성 등에 대해 상세 기술) - 폭력예방교육 이수증

다. 개발·운영비 지원방식

- 1) 지원시기: 학기 종료 후 결과보고서와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집행기준에 결격사유가 없을 시 지급
- 2) 항목별 지급방식

구분	증빙자료구분	작성자	지급방식
원고료	강의계획서	담당교수	원고 매수 기준으로 산정하여 실비 지급
	강의교안	담당교수	
	기타 자체제작 콘텐츠	담당교수	
특강료	특강계획서 특강 결과보고서 참석자 명단	담당교수	- 대학원 혁신지원비 집행 지침에 따라 교내 교원에 대한 특강료는 지급이 불가함 - 강사료 확인서의 지급금액 확인 후 강사 본인에게 계좌이체
	강사료 확인서 특강 강사카드 개인정보 동의서 신분증, 통장사본	특강강사	
펠로우십	개설신청서 운영보고서 학과 회의록	각 학과	학생에게 장학금의 형태로 지급

- 3) 원고료, 특강료, 펠로우십의 금액을 합산하여 과목당 1,000,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
- 4) 증빙자료 미비 또는 자료 부실 제출 시 개발·운영비를 미집행할 수 있음
- 5) 개발·운영비 지급 대상인 담당교수, 특강강사, 학생 제안자는 추후 개발·운영비 신청시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와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